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561

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9일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

2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3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19년 4월 2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이영실 의원)

- 1. 제안이유
- 가. 간접흡연은 흡연과 찬가지로 암,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 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,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 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 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.

- 다. 또한,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.
- 라.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에서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함
- 나.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(안 제 1조)
- 다.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라.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- 마.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,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, 제5조제5항)
- 바.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, 제9조제3항)
- 사. 금연지도원의 야간, 새벽,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

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6항, 제9조의2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흡연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 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안된 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 하는 안임.
- 또한 영유아와 아동을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하여

-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의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에서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개정하였음.
- 금연환경에 대하여 개정안(제2조제3호)은 "'금연환경'이란 시 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."라고 하여 금연환경은 금연

의식의 제고 및 금연문화의 조성으로 정의하였음.

○ 이는 금연환경이란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인지적 측면에 서의 환경조성,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조성으로 인한 물리적인 환 경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. 개정안(제9조)은 기존 조례의 금 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금연환경의 조성으로 개정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 ① (생	제9조(금연환경의 조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<u>시장은</u>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	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<u>설치·운영하거나</u> 건강증진사업	<u>설치·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</u>
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	<u>성 등</u>
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	
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	
③ <u>시장은</u>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	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	
자원봉사자("자원봉사단체"를 포	
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	
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○ 담배는 중독성을 지닌 대표적인 합법약물로 약물사용에 대한 리 터러시(literacy)¹⁾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내용은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.

나. 금연구역의 신규지정과 관련

- 개정안 금연구역 지정 규정(제5조제1항제4호)은 다음과 같이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임.
 -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- 이는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제9조제6항)에 따른 것으로 보임.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6항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- 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 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

¹⁾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로 문해력을 의미함. 일반적으로 정책에서 literacy란 정보를 찾고, 이해하고, 평가하고, 문제에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.

을 말한다)

-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- 상위법의 조항을 볼 때 해당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2)
- 이때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.3)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구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인 바,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는 조례가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관사무 위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.

^{2) 「}지방자치법」제102조(국가사무의 위임)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

^{3) &}quot;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이를 구체화한 것이「지방자치법」제22조인데, 동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'법령의 범위 안에서' '그 사무에 관하여'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"

[&]quot;여기의 '법령의 범위 안에서'와 '그 사무에 관하여'가 조례제정권의 한계이다. '법령의 범위 안에서'와 관련하여서는 '법률적합성의 원칙'('법률우위의 원칙'과 '법률유보의 원칙')이 문제되며, '그 사무에 관하여'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문제된다."

출처: 법제처(2013) 판례, 해석례, 의견제시 사례 등 검토를 통한 조례규정 가능 사무 판단기준

- 그러나 동법 동조 제7항은 "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"고 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조례 에 대폭 위임한 상황임.
- 개정안의 소관사무 위반여부를 살펴본다면 상위법에서 자치구청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항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벗어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의 경우에도 10만원으로 상위법에 서 규정한 사항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4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.
- 또한 개정안이 시장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로 지정하기 보다는 자 치구청장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m 이내에 대한 금연구역 고 시를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.5)

^{4) 「}국민건강증진법」제34조제3항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[「]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제10조제1항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^{5) 「}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 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

3 종합의견

개정안은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등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. 또한 시장이 이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추후 상위법이 금연구역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동 조례 (제5조)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문화 조성에 기역할 수 있는 바, 이러한 면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| 번호 | 561 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:이영실, 홍성룡, 박순규,

추승우, 이정인, 김인호,

김화숙, 이병도, 김혜런,

김호평, 박기재, 문장길,

오현정, 이광성, 김정환,

권영희, 김소양, 김용연,

김동식, 서윤기, 봉양순

의원 (21명)

1. 제안이유

-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,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 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,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 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 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
- 또한,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 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

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에서 "서울특별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함
- 나.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(안 제1조)
- 다.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라.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- 마.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,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, 제5조제5항)
- 바.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, 제9조제3항)
- 사. 금연지도원의 야간, 새벽,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6항, 제9조의2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를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모든 시민을"을 "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"로, "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통해"를 "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"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간접흡연"을 "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"으로, "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"를 "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흡연행위가"를 "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연에 관한"을 "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"로 한다.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교육환경보호구역(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환경보호

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
제5조제1항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
 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-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"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"을 "(금연환경의 조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은"을 "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"으로, "설치·운영하거나"를 "설치·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장은"을 "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6항 본문 중 "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"을 "활동수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규칙으로"를 "시장이 별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	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<u>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 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는데 목적이 있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1조(목적) <u>시민의 건강</u> 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 하고 <u>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</u>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 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 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.
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<u>간접흡연</u> 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<u>흡연행위가</u>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	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 ② 금연환경조성을 위해흡연이

다

- 구 · 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서울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

<신 설>

- 4. (생략)
- 5. (생략)
- 6. (생략)
- 7. · 8. (생략)

_	_	

-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·연 ③ ----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---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교육환경보호구역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| 에 의한 교육 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- 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 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 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(일반 공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-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6. (현행과 같음)
- 8. 9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 음)
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제9조<u>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</u> ① (생략)
 -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"자원봉사단체"를 포 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 - ④·⑤ (생 략)
- 제9조의2(금연지도원) ① ~ ⑤ (생략)
 -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지도원에게 <u>1일(4시간 이상 근무)</u> 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</u>,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
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	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
	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
	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
	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.
저	9조 <u>(금연환경의 조성)</u> ① (현행과
	같음)
	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	<u>설치·운영하거나</u> 금연환경조
	<u>성 등</u>
	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저	 9조의2(금연지도원) ① ~ ⑤ (현
	행과 같음)
	6
	<u>활동수당</u>

---. <단서 삭제>

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①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 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</u> 로 정한다.

7	
	<u>시장이</u>
별도로	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| 번호 | 561 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:이영실, 홍성룡, 박순규,

추승우, 이정인, 김인호,

김화숙, 이병도, 김혜런,

김호평, 박기재, 문장길,

오현정, 이광성, 김정환,

권영희, 김소양, 김용연,

김동식, 서윤기, 봉양순

의원 (21명)

1. 제안이유

-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,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 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,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 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 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
- 또한,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 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

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에서 "서울특별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변경함
- 나.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(안 제1조)
- 다.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라.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- 마.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,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, 제5조제5항)
- 바.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, 제9조제3항)
- 사. 금연지도원의 야간, 새벽,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,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2제6항, 제9조의2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를 "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모든 시민을"을 "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"로, "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통해"를 "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"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간접흡연"을 "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"으로, "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"를 "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흡연행위가"를 "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연에 관한"을 "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"로 한다.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교육환경보호구역(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환경보호

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
제5조제1항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
 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-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"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"을 "(금연환경의 조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은"을 "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"으로, "설치·운영하거나"를 "설치·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장은"을 "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6항 본문 중 "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"을 "활동수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규칙으로"를 "시장이 별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	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<u>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 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 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는데 목적이 있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1조(목적) <u>시민의 건강</u> 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 하고 <u>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</u>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 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 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.
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<u>간접흡연</u> 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<u>흡연행위가</u>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	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 ② 금연환경조성을 위해흡연이

다

- 구 · 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서울 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

<신 설>

- 4. (생략)
- 5. (생략)
- 6. (생략)
- 7. · 8. (생략)

_	_	

-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·연 ③ ----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---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교육환경보호구역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| 에 의한 교육 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)
- 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 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 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(일반 공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-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6. (현행과 같음)
- 8. 9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 음)

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제9조<u>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</u> ① (생략)
 -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"자원봉사단체"를 포 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 - ④·⑤ (생 략)
- 제9조의2(금연지도원) ① ~ ⑤ (생략)
 -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지도원에게 <u>1일(4시간 이상 근무)</u> 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</u>,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
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	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
	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
	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
	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.
저	9조 <u>(금연환경의 조성)</u> ① (현행과
	같음)
	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	<u>설치·운영하거나</u> 금연환경조
	<u>성 등</u>
	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-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저	 9조의2(금연지도원) ① ~ ⑤ (현
	행과 같음)
	6
	<u>활동수당</u>

---. <단서 삭제>

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①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 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</u> 로 정한다.

7	
	<u>시장이</u>
별도로	